

문화재
국립
사전 개요.

청량리경찰서에서 발병하기까지

60일간의 사건기록

(1986. 10. 12 ~ 1987. 2. 28)

- 청량리경찰서 자수 (1986. 10. 12)
- 청량리서 대공과에서의 생활(10. 12 ~ 11. 22 : 40일)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 청량리서 대공과(10. 12 ~)
- 청량리서 유치장(~ 11. 22)

- 성동구치소(1986. 11. 22 ~ 12. 12 : 20일) 죄수복 착용
- 성동구치소
-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 (10일정도)
- 성동구치소 내 정벌방 (4일정도)
-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득방

-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1986. 12. 12 ~ 1987. 2. 28)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의 생활 (10.12~11.22:40일 동안의 생활)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취조실에서 조사함. 조사내용은 '1. 백연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 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전 T방 3개를 얘기했고 79모임방은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들이 "요 부근 아니냐"는 등의 유도심문을 했는데 이미 그들은 방을 알고 있었다. 본인은 진술서도 한 번 쓴적 없었다고 함.

경찰서 내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3일간 조사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게 했을 뿐이다.

-경찰들이 무언의 겁을 주는 발언들을 하며 석유통을 문국진의 앞에 놓거나 들고 왔다갔다 함. 석유난로는 문국진과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진과 정면으로 보이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줌.

-청량리경찰서 과장이 "막대기 30센티미터짜리를 몇개 만들어라" "어머니한테 가서..." 등의 공포적인 말을 뇌까림.

-그외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으나 자세히 본인은 현재 기억이 안나고 하염튼 경찰측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고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점점 더해갔다.

문국진이 담당경사 김낙현에게 이런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사는 싫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들 놀람.

이후 3일만에 취조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

함_ 청량리 대공과 내에는 조그만 방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숙직실이었고 1개는 취조실이었다.

일주일쯤 후에 청량리 유치장 독방에 수감됨

부모님이 날씨가 추워(11월말경) 내복을 반입했으나 본인은 입지 않고 있어 형사에게 물어보니 형사가 일어버렸다고 함, 그래서 나중에 헌 내복을 다시 가져갔음.

부모님이 면회할 때 몸을 자꾸 고고 헛소리 했음.

_ 아무튼 증세가 심하진 않았으나 이상했음.

문국진은 청경 유치장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놈은 괜찮은 놈, 저놈은 안 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 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터 미친 척한다"며 또 다시 구둣발로 참.

보름쯤 후 경희대 병원에 의뢰하여 감

그 상태로 보름쯤 있다가 과장의 지시로 경희대 병원에 김낙현과 함께 갔었음.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눈알을 뒤집어보고 성기를 몇차례 움직여본 후 별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보냄.

이때 문국진은 경찰과 의사가 자신의 눈알을 빼고 사지와 성기를 자른 후 전향을 요구하면서 어느 이름모를 매립지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으로 자신의 육신을 토막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결코 전향은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면서 무저항 상태로 있었다고 함.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김낙현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뒤돌아 서서 울었음.

이때 부모에게 경찰들은 문국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으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었느냐고 물음.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고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

떤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 (문국진이 자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온).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독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독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독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뜬을 떠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쓴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쓴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해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찾으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독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한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독방)에 끌려가 꽁꽁 손발 묶이고 온몸도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먼 수건을 뒤집어 씌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조그리고 감혀서 누어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유머가 있고 사려깊은”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사회의 부패한 곳을 볼 줄 아는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고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몽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처참히 짓밟하고 찢겨 그는 힘 없이 신음만 토하고 있다.

문국진씨는 최근 입원하기 3일전(1993. 6. 23)에 그의 아내에게 눈물겨운 편지를 썼다.

“...해! 암울했던 어둠을 불사르고 또다시, 그리고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철(鐵)의 영원과도 같이 느껴지던 그 암흑의 시간, 그것은 등티오르는 노동자의 또 다른 힘찬 출발과도 같이 해처럼, 드디어 밝아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암울, 참담, 처절(!) 그리고 절대적 고독을 물리치고 이제 또 다시 떠오릅니다.

동지!

나의 숙명과도 같은 동지여! 이렇게 처음 불러봅니다. 이제 당신은 000이라는 혀상을 쓰지 말고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운 꼽추의 일어섬 같은 인간 문국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고뇌하는 예수’, 산장에서 밤새워 피땀흘리며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애원하며 매달리며 십자가의 고난, 고통, 창피, 수치스러움을 회피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아들 예수’와도 같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미물이을 떠릅니다.

개인은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중한 것들! 부디 당신은 고통을, 인간 모든 증생들의 고통을 스스로 온 몸으로 체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 문국진이라는 인간의 고뇌와 육체적, 전(全)존재적 고통 속에 동참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잊어버리면 나는 개(犬)와 같은 존재일 것이요. 인간(男)과 인간(女)이 만나서 . . . 여기까지 살아왔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신과 나의 이 순조롭지 못한 세월들!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스스로를 훈련, 단련, 강화, 발전, 성숙시켜야 하오. 발전 없는 삶은 퇴보일 뿐이요. 직장생활! 할 말이 없소.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하오.

. . . . (중략)

드디어 새벽 5시, 주홍색빛 태양이 육상 위 주택가 지붕 너머로 제 모습을 드러냈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소. 당신의 암·울·암·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처절한 삶에의 의지이며 몸부림인가! 윤연옥씨는 이 진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자꾸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추스려 출판사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남편의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며 딸 해인의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 (문국진이 자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 옴).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독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독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독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봉을 펴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려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헤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찾으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독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독방)에 끌려가 꽁꽁 손발 묶이고 온몸도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 먼 수건을 뒤집어 썼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쪼그리고 갇혀서 누어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그 후로 다시 독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깼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기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자름.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츠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자름.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12.12~1987.2.28)

검사취하에 있었던 기간임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취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외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북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밀羕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증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그 후로 다시 독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깨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짖음.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츠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12.12~1987.2.28)

검사회하에 있었던 기간임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회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의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그후 기소유예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북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중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취지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몫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 동지의 쾌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죄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加害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듬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팩스: 745-9712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제2차 대표회의

일시: 1993년 11월 16일 오후 6시30분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1. 참석자 확인
2. 개회
3. 민주의례
4. 전 회의록 검토
5. 활동 보고와 평가
6. 안건 토의
 - 1) 재판에 관한 건
 - 2)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 계획안 검토
 - 3) 국회청원에 관한 건
 - 4) 기타 안건
7. 차기 회의 및 일정 확인
8. 폐회

제1차 대표회의 회의록

일시: 1993.10.19.

장소: 인권운동사랑방(낙원동)

참석자: 박정기 대표, 인재근, 최의팔 부대표, 윤연옥, 전포혁, 곽진선, 박성인,
박래군(서준식 부대표는 사전 연락 미비로 회의 도중에 참석)

1. 발족식에 대한 평가

- 가. 평일 오전이었고, 준비기간이 축박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게 되었다.
- 나. 일반적인 정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하고 분노하는 분위기가 낮다는 점의 반영이다.
- 다. 문국진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
- 라. 일단 발족한 모임이고, 이는 대중에게 공신력을 갖어야 함으로 이후 사업에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2. 국회청원의 건

- 가. 국회청원의 건은 10월 말까지 서명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였음.
- 나. 국회청원은 11월 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회청원시 기자회견보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도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서명시에는 서명용지, 자료집, 청원취지서, 회원 가입서등을 함께 들고 다녀서 홍보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연'은 모임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되 불가능한다고 판단시는 빠른 시일 안에 포기한다. 문화공연보다는 조촐한 송년모임 정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 주점은 공연이 취소될 경우 11월중에 연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연이 성사될 경우 12월중에 보고회 형태로 한다.

5. 신문광고는 유보한다.

6. 회원가입을 적극화하고, 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를 통해 홍보작업을 벌인다.

7. 상근간사를 윤연옥씨로 하고, 이후 다른 인력이 필요할 경우는 추후 결정한다.

8. 연대 동문들이 모금하는 것은 1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9. 회의는 전체회의와 집행회의로 하고, 전체회의는 매달 세째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갖고, 집행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갖기로 한다. 일단 전체회의는 11월에는 11월16일 오후 6시30분, 12월에는 14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10. 해외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를 서준식 부대표가 하고, 회의를 마침.

〈토의안건〉

1. 국회청원의 건
 - 가.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은 목표치를 넘었고,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하여 결정만 되면 언제라도 청원을 할 수 있는 상태임.
 - 나. 서명자들을 애초의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가 흔들리면서 혼란이 있었음.
 - 다. 현재 시점에서 청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2. 재판
 - 가. 첫 재판이 오는 11월 18일(목)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599호에 열림.
 - 나. 이와 관련하여 회원과 서명자들, 각 단체에 이를 그간의 경과와 이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였음.
 - 다. 첫 재판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추동할 필요가 있고, 재판을 알리는 작은 광고가 필요할 것임.
3. 고문후유증 사례발표회에 관한 건
 - 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추진되던 공연은 이후 문화집회 수준으로 축소하여 추진 하려 했으나, 연대 동문들의 주체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절대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1월 초에 완전히 취소된 상태임.
 - 나. 이를 보완하여 연대 안에서 홍보 및 조직화하는 목적과 고문후유증에 대한 홍보를 알리기 위한 고문후유증 사례 발표회를 12월 초 인권선언주간에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가능하면 연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4. 해외 관련 사업은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지난 11월 9일에 엠네스티 사람과 만나서 문국진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자료를 주었음.
5. 조직사업에 관한 방안과 이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잡아야 됨.

청원제출용지

수신: 국회의장

제목: '고문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
123조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3. 서명부 3부

끝.

청원자(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 5)

문국진과 함께 모임 대표단 5인

성명 박정기(인)
 인재근(인) 최의팔(인) 서준식(인) 최민화(인) 외 1279인

소개의원(대표) 임 채 정 (인)외 인

서명자 통계

변호사	-----	30인
의사	-----	13인
교수	-----	1인
재야인사	-----	30인
강사	-----	55인
기독교	-----	268인
천주교	-----	24인
불교	-----	15인
여성단체	-----	90인
일반인(연대를 제외한 학생 포함)	-----	541인
연세대 학생	-----	216인
기타	-----	3인
합계	-----	1,284인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의 생활 (10.12~11.22:40일 동안의 생활)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3일 동안 잠을 안 자우고 취조실에서 조사함. 조사내용은 '1. 백원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 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전 T방 3개를 얘기했고 79모임방은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들이 "요 부근 아니냐"는 등의 유도심문을 했는데 이미 그들은 방을 알고 있었다. 본인은 진술서도 한 번 쓴적 없었다고 함.

경찰서 내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3일간 조사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의자에 앉아서 기민히 있게 했을 뿐이다.

-경찰들이 무언의 겁을 주는 발언들을 하며 석유통을 문국진의 앞에 놓거나 들고 왔다갔다 함. 석유난로는 문국진과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진과 정면으로 보이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줌.

-청량리경찰서 과장이 "막대기 30센티미터짜리를 몇개 만들어라" "어머니한테 가서..." 등의 공포적인 말을 뇌까림.

-그외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으나 자세히 본인은 현재 기억이 안나고 하옇튼 경찰측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고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점점 더해갔다.

문국진이 담당경사 김낙현에게 이런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사는 쉽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들 놀람.

이후 3일만에 취조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부모가 사건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

고문피해소송 제기에 즈음한
경과보고 및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

사회 : 진영종

1. 민주의례
2. 개회사
3. 사건 경과보고
4.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경과보고
5.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사업 취지와 계획
6. 소송과 관련한 근거 및 소송 계획
7. 기족 인사
8. 폐회사

후원: 어제 마누 흘리
제3회 인권위원회

35
175
10
소장

원 고 문 국 친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대한민국

소송물가액 : 200,000,000원
첨부인지액 : 1,000,000원
송달료 : 26,400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 문국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창림빌딩 2층)

피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두회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담의 행방 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취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 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척한다 하여 구둣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을 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바. 원고는 그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는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 든 명

변호사 백 승 헌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고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 자료집 -

- * 사건기록
-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사업계획
- *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
- * 담당 의사 소견서
- * 언론 보도기사
- * PC 통신 편지 모음
- * 수사기관 고문피해 사례
- * 참고자료 - 고문피해자의 정신병리학

1993. 10. 13

없는 가입과 전 조항의 비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加害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 및 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두려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름으로써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대표와 청원인 일동은 국회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3년 11월 일

청원인 대표 박정기, 인재근, 최의팔, 서준식 외 인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취지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혐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끝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 동지의 쾌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죄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加害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름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팩스: 745-9712

그 후로 다시 독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깼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지름.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추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12.12~1987.2.28)

검사취하에 있었던 기간임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취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외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그후 기소유예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북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증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면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
(문국진이 자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
옴).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득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득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득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둥을 펴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
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헤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쳤으
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득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
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득방)에 끌려가 꽁꽁 손발 묶이고 온몸도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
먼 수건을 뒤집어 썼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쪼그리고 갇혀서 누어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득방

함. 청량리 대공과 내에는 조그만 방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숙직실이었고 1개는 취조실이었다.

일주일쯤 후에 청량리 유치장 독방에 수감됨

부모님이 날씨가 추워(11월 말경) 내복을 반입했으나 본인은 입지 않고 있어 형사에게 물어보니 형사가 잃어버렸다고 함, 그래서 나중에 헌 내복을 다시 가져갔음.

부모님이 면회할 때 몸을 자꾸 꼬고 헛소리 했음.

아무튼 증세가 심하진 않았으나 이상했음.

문국진은 청경 유치장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놈은 괜찮은 놈, 저놈은 안 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 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또 다시 구둣발로 참.

보름쯤 후 경희대 병원에 의뢰하려 갑

그 상태로 보름쯤 있다가 과장의 지시로 경희대 병원에 김낙현과 함께 갔었음.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눈알을 뒤집어보고 성기를 몇차례 움직여본 후 별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보냄.

이때 문국진은 경찰과 의사가 자신의 눈알을 빼고 사지와 성기를 자른 후 전향을 요구하면서 어느 이름모를 매립지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으로 자신의 육신을 토막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결코 전향은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면서 무저항 상태로 있었다고 함.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김낙현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뒤돌아 서서 울었음.

이때 부모에게 경찰들은 문국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으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었느냐고 물음.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괴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

그후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
떤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
(문국진이 자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
옴).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득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득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득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풍을 펴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
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헤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쳤으
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득방에다 가두고 몸을 꽁꽁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
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득방)에 끌려가 꽁꽁 손발 묶이고 온몸도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
먼 수건을 뒤집어 씌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쪼그리고 갇혀서 누워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득방

그 후로 다시 득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깼다는 이야기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지름.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갑.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추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증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갑.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증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12.12~1987.2.28)

검사취하에 있었던 기간임

증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취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의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증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그후 기소유예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북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덜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증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고문의 실상

절대적 불균형

바이어와 부거에 의하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어떤 대칭성(조화)이다. 진정한 만남은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고문 상황을 특정짓는 첫 번째 특징은 고문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불균형 관계이다. 가해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문 피해자는 거의 혹은 전적으로 어떤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고문피해자는 자기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을 이용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 시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피해자들은 수감이 채워져있거나 눈이 가려져 있어 그 참혹한 상황과 자신 앞의 가해자조차도 알아볼 수 없다. 가해자의 힘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서

결국에는 어떤 신념의 자발적인 변화나 의지가 격이는 것을 원한다.

고문의 형태는 신체에 물리적인 가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에도 가해진다.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기술들은 수감자들의 방을 비롯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정체불명

고문의 두 번째 특징은 정체불명한 것이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고문의 순간까지 서로를 모른다는 것이다. 고문의 희생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문한 자의 이름을 모르며, 고문자들은 종종 피해자의 참 인간성에 관하여 고문자의 상사에 의해 왜곡된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집합적인 실제로서 대표한다. 고문자는 특별한 종자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고문을 가하는 자들의 지도와 훈련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적대자집단으로부터 특징지워지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라며 그들을 혼란시키며 죽음의 그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 가해자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의 상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임자의 과도한 폭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후임자에 의해서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해를 끼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격적 행위에 대한 정신병리학적인 연구 결과 전시 선전포고의 문학은 인간의 공격적인 행위를 자극하고 허락하는 요인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인격파탄의 행위이다. 피해자측에서의 접근은 동물과 인간에 내재하는 공격성에 대조적이다.

고문가해자는 부분적으로 격세유전의 법칙으로 과도한 슬픔을 지난다. 외내하면 그의 폭력성은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들의 친밀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소장

원 고 문 국 전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림빌딩 2층)

피 고 대 한 민 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해 배상 청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총단액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과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등으로 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제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보문기 기록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답의 행방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행했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극도의 공포감속에서 취조를 당했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건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 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려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경찰은 정신과 검진을 받게 해달라는 부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수사류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

더 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척 한다하여 구둣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용하지 않다가 송치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발생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원고를 종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 후 계속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 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 분류(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 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인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든영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배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밥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일해 이래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전 단서

1봉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분

1봉

1. 위 입증방법

1봉

1. 위 임장

1봉

1. 납부서

더 수 합 동 법 률 사 무 소

변호사 이든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1993. 1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백승현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8479

소장

원고문국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대한민국

소송물가액 : 200,000,000원

첩부인지액 : 1,000,000원

송달료 : 26,4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함께 그에 대한 첨부인자금 1,000,000원을 더하여 송달료 26,400원을 지급하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67-2316 FAX: 565 - 8479

소장

원 고 문 국 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든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립빌딩 2층)

피 고 대 한 민 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해 배상 청구 의 소 (기)

청 구 기 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충당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든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아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 경찰서 대광과에서 경사 김나현등으로 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제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답의 행방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행했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제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국도의 공포감속에서 취조를 당했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 같이 고ぶ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려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경찰은 정신과 검진을 받게 해달라는 부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었음에도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척 한다하여 구둣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용하지 않다가 송치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원고를 종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 후 계속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 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 분류(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금성반응 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인다”입니다)

사. 결국 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든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배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밥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일해 이래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진 단 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분

1통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 입장

1통

1. 납부서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든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 8479

1993. 1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백승현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명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현 법률사무소

서울 .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립빌딩 2층)

TEL: 565-8477~8, 593-5041 FAX: 565 8479

1993. 6. 23. 14:00 ~ 15:00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파트에 살던 남자에 3명(부모와
아내)이 차량 1대를 타고 출발한 후 차량이 차량과 충돌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사건 기록
2.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신문·잡지 투고용)
3. 문국진씨가 입원하기 3일 전(1993. 6. 23 水) 아내에게 쓴 편지

4. 문국진의 아내가 드리는 글

그 다음 일을 주전으로 가지고 대형 주현자로 보여 계속 불을 부른 이러한
증언을 여러 차례 듣게 되었다. 물론 서대문 청사가 이론 밀집을
한데 차안본부 차기(대공 수사과)에서 조사받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데리는 것이었음.

그 당시 유큰소방이 관사(화곡동)에서 충돌된 확성을 A·B·C급으로 친정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고, 본모님과 친구인 유탄 13기 공기 이상원에게도
고문은 알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은 확실 어려운 전두환 등과 서기라
여길 수 없다고 했.

이후 형사는 그를 면회당하고 했고
1년 만에 고년 신청을 제출해 그를 청와대에 출현당, 당시 면회하는 김의
조카였다.

처음 출마중에 말에 뒤집힌 이후 사고로 정부 세습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활동
권을 주지 않았던 그에 대해 서대문 청사가 그에게 부탁해 놓았고 그는

문국진 사건 기록

(문국진의 아내)
2월

2학년 때인 1980년 3, 4월경 서대문 시범아파트에 살 때 세벽에 3명(서대문 서 형사: 현재 치안본부 근무)이 들이탁쳐 문국진을 데려감.

곧바로 부모가 따라 갔으나 면회는 못했고,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알아 봤더니 연세대 학생 1명이 프락치 활동을 하여 [운동권 학생을 찍어오면 너 (현재 안기부에 근무)는 감시대상에서 풀어주겠다고 함)] ***이후 문국진은 "프락치가 되느니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기록을 일기 곳곳에 남겼음.

며칠 후 형사가 와 5~6권의 책을 압수해갔는데, 그중 문국진이 연세대 도서관에서 대출한 (사회과학에 관련된) 책이 있어 나중에 그의 부모가 도서관측에 1만원 넘는 책값을 지불했음.

부모가 서대문서에 계속 찾아갔으나 면회하지 못했고, 그후 1달 만에 서대문서에서 면회했는데, 그때 문국진은 극히 초췌한 얼굴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애원함.

문국진이 서대문서에 끌려가자마자 서대문서 뒷골목 치안본부 대공과로 끌고 가 고문 시작, 3일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발가벗기고 쌀가마니로 둘둘 말은 채 무진장 때리기만 함. 하루 종일 맞은 후 저녁에 감방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마받고 새벽이 되면 고문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골방으로 끌려가 무조건 맞음. 치안본부 합재옥의 이름이 일기 곳곳에 나옴.

그 다음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형 주전자로 코에 계속 물을 부음. 이러한 물고문을 여러 차례 당함. 보다 못한 서대문 경사가 이를 말렸음.
현재 치안본부 자리(대공 수사과)에서 조사받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대라는 것이었음.

그 당시 육군소령이 관사(화곡동)에서 운동권 학생을 A·B·C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고, 부모님과 친구인 육사 12기 동기 이상원에게도 고문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은 워낙 어려운 전두환 등극 시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함.

이후 형사는 고문 안했다고 함.
1년 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남. 당시 변호사는 김익보씨였다.
연대 동기들에 말에 의하면 구속 사건이 있은 뒤 술을 마시면 그전과 달리 주사가 무척 심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함.

1986년 3월 25일 '보임, 다산 사건'이란 조직사건으로 신수동에 있었던 보임(편집디자인 기획실)에서 고경대, 박성인, 김상복, 혜중, 이범, 고성국 등이 잡혀갔고(3월 25일 세벽), 1, 2일 후 다산(성수동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차례로 잡혀가 총 10명 정도 구속되었음.

구속되고 1, 2주일 후 백원담, 문국진이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신문에 조직사건이 발표됨(백원담은 1987년 대선직후 수배해제, 문국진은 1993년 현재까지 복권 안되었음)

이후 수배 기간 동안 문국진은 부천에 월세방을 얻어 지내다가 주인집의 거동이 수상하게 생각되어(신고했을 것이라는 판단) 이사하겠다고 대강 집을 쟁기 후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 서울에 온 후로 이를 동안 전전하다 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전화해 부모와 통화함.

3·25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부모들이 이문시장 근처에 살 때 매일같이 청경형사 10명이 집에 와서 책을 10권 가량씩 가져감.

아버지가 수색영장을 보이라고 하자 3번 만에 영장을 가져옴.

집주인에게 압력을 주어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결국 뽑겨나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함. 또한 에딘버러 옷가게로 청경찰이 와서 청경으로 부모를 데려가 "1달에 얼마씩 돈 대주나"며 육박지르고 수첩을 뺏었고 부모가 이를 날 수첩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내줌.

가게에 대공과 형사 10명 가량이 하루종일 진치고 앉아 영업을 못하게 했으며 가게를 빼라고 주인에게 압력을 넣음(가게 주인이 나중에 이 말을 부모에게 함). 또한 청경 계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을 자수시키면 학교 복학도 시켜주고 곧바로 내보내 주겠다고 계속 회유했음.

자수한 날(건국대학교 방화점거농성사건 직전, 10월 말경) 세벽까지도 그 상태도 포위하고 있었음.

문국진은 윤연옥(지금의 아내)의 집에 이를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며 자신의 거처를 알렸고 부천에 살던 후배 유호선에게 전화를 해 뽑기고 있음을 알림.

여관에서 이를밤(그 사이에도 여관을 몇번 옮김)을 보내고 낮에는 이화여대 근처 카페로 계속 장소를 옮기며 돌아다님(본인은 부천에서 거쳐하던 방이 이미 경찰에 알려졌고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도망을 찾으며 윤연옥이 문국진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그 방을 찾아갔으나 급하게 도망간 흔적이 역할했다. 윤연옥은 문국진의 옷 몇 벌(당시 날씨가 점점 싸늘해졌으므로)을

문국진은 이를을 도망 다니다 새벽(4월 26일경)에 전화함. “엄마 나 참을 수가 없어. 나 바깥에 있을 테니까 행길로 나와”. 벌벌 떨며 서있던 문국진을 집으로 데리고 와 청경에 가서 자수시킴(마침 이때 경찰들이 없었음).

문국진만 남겨두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옴. 청량리서 유치장에 구속된 후 내복을 들여보냈으나 반입이 안되고 3일 동안 잠을 안자우고 조사받게 함. 조사내용은, 1. 백원담이 어디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이후 형사들이 부천의 거처하던 방에서 책을 2박스 정도 가져옴)

이후 3일 만에 청경에서 집으로 연락을 함.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 가보니 완전히 돌아버려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 키려고 사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

며칠 후 면회를 다시 갔는데 발가벗은 채로 들어오면서 발길로 난동질하고 “나를 해친다. 나를 해친다”는 소리를 해댐. 발가벗은 온몸에 푸른 멍이 들어 있어 본인에게 물었더니 전경들이 구둣발로 마구 찼다고 함. 부모가 경찰에게 “온통에 왜 멍이 들었느냐”고 다시 문자 문국진이 단식하고 문짝 부수어서 때렸다고 했음. 접견실에서 면회하고 나오려고 하자 문국진이 벌거벗은 몸으로 마구 뛰어나니면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고 소리치고 발버둥치는데 도저리 눈뜨고는 못볼 지경이어서 그제 엉엉 울었다고 함.

문국진은 청경구치소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 놈은 괜찮은 놈, 저 놈은 안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 한다”며 또다시 구둣발로 참.

1달 정도 있다가 성동구치소로 옮겨진 후, 이런 상태인 사람을 독방에 가두어 놓았다. 칸막이로 면회할 때 문국진 뒤에 3, 4명의 경찰이 항상 서 있었고 줄로 꽁꽁 묶은 채 면회시킴.

부모가 계속해서 검사(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하자 “알았다”고만 말함.

이후 인권위 변호사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 걸자 검사는 움추려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대 일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